

공 시 송 달 공 고

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 및 제73조(연체료 등의 징수),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(독촉)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1. 제 목 : 국유재산사용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

2. 근거법규

- 나. 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 및 제73조(연체료 등의 징수)
- 다.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(독촉)
- 라. 국세기본법 제11조(공시송달)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(송달)
- 마.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(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)

3.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15일간(2022. 3. 28. ~ 2022. 4. 11.)

4. 공고대상자 및 내역

(단위: 원)

체 납 자		체 납 내 역		
성 명	주 소	징수결의번호	부과금액	징수과목명
(주) 에스**닉*에스	전북 군산시 대야면 번*로 *83, 2층	191008524 외 18건	60,342,480	국유재산사용료, 변상금 등

5.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,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【☎(063)240-3585】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03월 28일

전북지방우정청장